

제28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6월 15일
전문위원 최 광 호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46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5월 27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요건 정비 (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위원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됨.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 내부위원 자격요건 중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체화

- 나. 공직유관단체 추가지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관할대상 조문내용 변경 (안 제3조)
 -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추가 지정·고시에 따라 강서구시설관리
공단 임원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변경
-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7조)
 -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
으로 구체화
-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맞춤법 등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 제9조제3항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 의: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3.31.~2021.4.20.)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수 확대 및 자격 구체화(안 제2조)

- 위원회 정수를 '5명 → 7명' 으로 민간위원 정수를 '3명 → 5명' 으로 확대
- 민간위원 자격을 '법관' 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로 변경

○ 위원회 관할 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제1호)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에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으로 변경

○ 위원회 간사 등 정비(안 제7조제2항)

- 간사는 감사담당관,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명시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7조제1항)

다. 종합 의견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안 제2조(구성)와 관련하여

-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 을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하여 '7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도록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 안 제2조제1항제1호 '3명에서 5명' 으로 늘어나는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법관' 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강서구 소속 공무원’ 을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으로 참여 위원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 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음.
- 안 제3조(기능)제2항의 ‘관할대상’ 을
 -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에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으로 변경하여 공직의 보편적 윤리기준이 유관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 안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에서
 - 간사는 ‘감사담당관’ ,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 이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7조제1항은
 -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1)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정한 심의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부칙 <제1775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